

	성과혁신센터규정	규정번호	3-7-19
		제정일자	2020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 (성과혁신센터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전략기획처 산하 성과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대학성과관리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실무 추진
2. 대학자체평가 계획 수립, 실행, 자체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
3. 대학의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 실무 추진
4.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및 분석에 관한 사항
5. 기타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③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을 두며, 필요한 경우,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성과혁신센터운영위원회) 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혁신센터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및 자문한다.

1. 대학성과분석 및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교육품질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학 평가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전략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, 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, 전임교원과 실무담당직원을 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2분의 10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세부사항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